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가단50483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7. 8.

판결 선고 2020. 7.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52,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7. 22.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55,463원 및 그 중 53,060,000원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아파트의 수분양자로 2015. 4. 21.경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집단 중도금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1 내지 3회차 중도금을 대출받았고, 그 후인 2016. 2. 15.경 제3자에게 자신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분양권 양도 후인 2016. 2. 16.경 원고에게 기존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기존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2016. 5. 9.경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피고에 대한 4차 중도금(53,060,000원)에 대한 대출을 예정대로 실행하였고, 그에 따라 분양계약상 공급자인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53,06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3.경 D에 분양권 매도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대출 실행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알리면서 및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53,060,000원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이에 D은 2016. 5. 24.경 피고에게 53,06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D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3,060,000원을 원고에게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사. 한편, 피고는 마치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4차 중도금 대출 53,060,000원을 대출받은 것처럼 2016. 5. 24.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 지급한 금원의 합계는 1,907,9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잘못 실행된 대출금 53,060,000원을 원고에게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종료된 사실 및 피고에게 송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원인 사실 등을 잘 알면서도 현재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날인 2016. 5. 24.부터 악의의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3,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D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입금한 2016. 5. 24.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 상당액(피고가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자조로 지급한 1,907,975원을 공제한 나머지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이 사건 대출 계약의 종료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분양권을 매도한 후 2016. 2. 16.경 기존 대출금 전액을 원고에게 상환하였음에도 원고는 정확히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4차 중도금 53,060,000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D에 송금하였다가 원고의 분양권 매도 사실 내지 대출금 전액 상환 사실 등을 알게 되어 추가 실행된 대출금 53,060,000원을 회수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기존 대출금 전액 상환으로 써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대한 종료 의사를 원고에게 표명하고 원고가 그러한 의사 표명(대출금 상환)의 존재를 인식하여 추가 대출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등으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대한 종료 의사를 표명한 무렵(늦어도 2016. 5. 13.무렵), 이 사건 대출 계약은 쌍방의 (묵시적) 의사 합치로 인하여 종료(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계약 종료 이후인 2016. 5. 24.경 D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인 53,0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종료된 후 송금된 위 금원을 보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53,060,000원을 송금받은 2016. 5. 24.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6. 5. 24.경부터 위 금원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한 악의의 수익자였다는 점 내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그러한 점을 인식하여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위 53,060,000원을 D으로부터 송금받은 즉시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송금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문의하였더니 '대출만기일에 대출금을 반환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D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1년 반 가까이 매달 정기적으로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 역시 피고로부터 그러한 이자 상당액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금원 송금 무렵 피고에게 53,060,000원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알렸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위 금원 송금 이후 금원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시 취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는 분양금이중납부를 원인으로 이를 원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D에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도록 D에 요청하였던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변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1)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법정이자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1,907,975원)은 부당이득의 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한다.

####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1,152,025원(= 피고에게 송금된 53,060,000원 -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금 1,907,9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준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신영

1)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함(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